



금산군의회  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4. 21.(화)  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-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# 의안 검토보고서

## 검토안건

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
전부개정규칙안

의회운영위원회  
전문위원 이금성

# 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34호
- 제출자 : 정옥균 의원 등 5인
- 제출일 : 2026. 4. 8.
- 회부일 : 2026. 4. 8.

## 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」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, 관계 직원 보호 규정 등 현행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변경(안 제4조제1항)
  - 구성 방식 : 당초) 외부 추천 → 변경) 외부 추천 및 공개모집 절차 병행
-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, 시민단체 1개 이상 대표 또는 임원 등의 심사위원 위촉 의무화(안 제4조제2항)
-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의 의장 허가 기준(안 제10조제2항)
- 징계·환수 처분 의원에 대한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(안 제10조제4항)
- 위법·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기구에 감사 및 조사 의뢰 의무화(안 제11조제5항)

- 출장결과 공개 범위 개정(안 제13조)
  - 당초) 누리집 게시 → 변경)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게시로 확대
-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(안 제14조)
  - 징계 대상자 및 징계종류 공개 의무화
- 공무국외출장 관련 소속 직원 보호 강화(안 제15조)
  - 부당지시 거부권 명문화 및 인사·평가상 불이익 금지 의무화
-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 개정(별표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- 현행규칙 : 「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
- 입법예고(2026. 4. 9.~4. 16.) : 제출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」의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, 기존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·책임성·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  - 주요 검토의견으로는,
    - 안 제4조에서는 위원 구성 시 기존 ‘외부 추천’에 ‘공개 모집’ 절차를 병행하고, 시민단체 대표 1인 이상 포함을 의무화 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,
    - 안 제10조·제11조에서는 임기만료 1년 이내 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고, 징계·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의 출장 제한 기간을 명시

하였음. 또한 위법·부당한 출장 판단 시 외부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출장 제한 및 사후 관리를 강화 하였음.

- 안 제15조에서는 의원의 부당한 출장 강요나 여행업체 알선 등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을 명문화하고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다만, 출국 45일 전 계획서 공개, 1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는 긴급한 국제교류 업무 발생 시에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, 시민단체 위원의 ‘다양성’ 확보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, 공모 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○ 마지막으로, 본 규칙 전부개정안은 행안부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, 직원 인권 보호와 외부 감사 의뢰 등 금산군의회만의 강화된 청렴 의지를 담고 있어 입법 취지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.